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203
----------	------

2023년 12월 15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나. 제출일 : 2023년 8월 14일
다. 회부일 : 2023년 8월 21일
라. 상정일 :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11월 2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한영희)

가. 제안 이유

-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출연개요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액: 2,653,969천원
 - 산출내역 : 전전년도('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2,116,404,703천원)×0.012%
-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2)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

- 지방세정책 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3)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출연은 법적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 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개요

-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4회계연도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동의)*을 얻으려는 것으로, 출연 대상 금액은, 전년 대비 0.4%(1천 1백만원) 증액된 26억 5천 4백만원 규모임.

< 출자 또는 출연에 대한 의회 의결(동의)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현황 >

설립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조직현황

○ 2011.4월 개원(영등포구 여의도동), 2017.9월 청사매입 이전(서초구 양재동)

○ 인력현황 (2023.9.30. 기준)

구분	계	원장	부원장	연구직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등
정원	88명	1명	1명	56명	2명	5명	23명
현원	71명	1명	1명	44명	2명	3명	20명
총인원	85명	정원의외 인원 14명 (과건공무원 12, 환경미화원 2)					

※ 연구직(44명) : 연구위원직 22명, 연구원직 16명, 조사분석직 6명

○ 조직 : 이사회, 원장, 5실, 1사업단, 5센터, 7부

- 5실(연구기획실, 지방세연구실, 지방재정연구실, 자치협력실, 경영지원실)

- 4센터(지방재정연구센터, 미래전략연구센터, 지방재정분석센터, 특례연구센터, 과표연구센터)

- 7부(연구기획부, 성과확산부, 과표사업부, 교육기획부, 법령정보지원부, 쟁송사무부, 경영지원부)

○ 이사회 및 감사
- 이사회 구성 현황 및 임기

구 분	대 상	임 기	구 성
선임이사 (10인)	광역자치단체 실·국장급(4인)	1년	서울, 세종, 전북, 제주
	기초자치단체 단체장(4인)	1년	전남 신안군(부이사장), 경남 밀양, 대구 중구, 경북 고령
	지방세 학식·경험 풍부한 자 (2인)	이사장 3년, 교수 2년	이사장(백재현 전 의원), 교수(공석)
당연직이사 (2인)	원장	3년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당연직	
감사 (2인)	지자체 추천 선임	2년	경기 오산시(22.2.28~24.2.27)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 조직 변천 과정

연 도	기 구 조 정 내 역	비 고
2011	○ 3본부 2실	○ '11.02~14.02 이사장 이원종(전 서울특별시장) ○ '11.02~14.02 원 장 강병규(전 행안부차관)
2015	○ 2본부 3실 4센터	○ '14.03~17.03 이사장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 '14.04~17.04 원 장 허동훈(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	○ 2본부 1관 10실 5센터	○ '17.12~20.12 이사장 허성관(전 행자부장관) ○ '18.01~19.04 원 장 정성훈(전 대구가톨릭대 교수)
2020	○ 5실 5센터 7부	○ '17.12~20.12 이사장 허성관(전 행자부장관) ○ '19.11~22.11 원 장 배진환(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2022	○ 5실 4센터 5부	○ '20.12~23.12 이사장 백재현(전 국회의원) ○ '19.11~22.11 원 장 배진환(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
2023	○ 5실 1사업단, 5센터 5부	○ '20.12~23.12 이사장 백재현(전 국회의원) ○ '19.11~22.11 원 장 강성조(전 경상북도 부지사)

□ 재 원 (지방세연구원 예산서 기준)

○ 전국 지자체 법정출연금(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수탁용역 등
- 2023년 총 예산 : 17,689백만원 (출연금 12,383백만원)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2	증 감	증감률(%)
계	17,689	18,070	△381	△2.1
지자체출연금	12,383	13,797	△1,414	△10.2
전기이월금	0	775	△775	△100.0
수탁사업비	216	3,207	△2,991	△93.3
행안부출연금	4,270	-	4,270	100.0
기타수익	819	290	529	82.4

※ '23년 2월 추경(수탁사업 → 행안부 출연계정) 및 '22년 12월 추경(서울시 출연금 미납분 26.4억원, 전기이월금 7.7억원 등) 반영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예산 (지출)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	구성비	2022	구성비	증감	증감률(%)
계	17,689	100	18,070	100	△381	△2.1
인건비	6,349	35.9	6,700	38.7	△351	△5.5
사업비	5,019	28.4	2,802	15.5	2,217	55.8
수탁연구비	216	1.2	1,423	7.9	△1,207	△658.8
경상경비	988	5.6	824	824	164	16.6
시설비	600	3.4	133	133	467	77.8
기금적립금	236	1.3	5,889	32.6	△5,653	△2,495.3
예비비	11	0.1	-	-	11	100.0
행안부출연사업	4,270	24.1	-	-	4,270	100.0

□ 주요사업

- 지방세·재정에 관한 정책 조사 및 연구
- 지방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지방세·재정에 관한 정책 법령 정보 관리
- 지방세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 출연금 산출 방법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 0.012%*

* 2012년까지 0.01%, 2013년 ~ 2020년 0.015%,
2021년 0.013%, 2022년 부터 0.012%

□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114,311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8,973	10,423	13,530	12,383

□ 서울시 및 자치구 연도별 출연금 현황

- 서울시(본청)은 13년간('11~'23) 237억원 출연 예정(연평균18.2억원)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국	114,311	3,940	4,597	6,587	7,712	7,137	8,267	7,570	12,102	10,844	8,973	10,423	13,530	12,383
서울시	28,226	969	1,134	1,281	2,303	1,758	1,950	362	4,409	2,631	414	2,424	5,451	3,139
시본청	23,720	795	953	955	1,975	1,446	1,636	-	4,044	2,247	-	2,020	5,005	2,643
자치구	4,506	174	181	326	328	312	314	362	365	384	414	404	446	496

나. 출연금 산정 방식 개선 필요

- 2024회계연도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 출연금은 26억 5천 4백만원으로,

- ※ 산출내역 : 전전년도('22회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22,116,404,703천원)×0.012%
산출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 ※ 개원 후부터 전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규모는 1,143억 1천 1백만원으로 이 중 서울시(분청)는 20.7%(237억 2천만원)를 차지하여 가장 큰 규모임.

- 먼저, 출연금 산정 방식을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회계연도 전 지방세(보통세*) 세입액에 일정률**을 적용하여 출연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여, 출연금 규모는 세입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 ** 2020회계연도 이전 1만분의 1.5, 2021년 1만분의 1.3, 2022년부터 1만분의 1.2,
산출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한편, 본 출연 관련 최근 5년(2018~2022회계연도) 출연금 산정 대상 회계연도의 지방세 세입 결산 규모는 연평균 8.2%(1조 1,974억 8천 2백만원)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본 출연금 산정 대상 세입액은(2022회계연도 세입 22조 1,164억원) 5년(2018회계연도) 전 세입 결산액(16조 1,290억원)과 비교할 때 37.1%의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출연율의 인하* 후 2개년(2021, 2022년도 출연) 동안의 출연금 규모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꾸준한 지방세 세입의 증가로 인해, 2024년도 출연금(2021회계연도 세입) 규모(26억 5천 4백만원)는, 출연율 인하 이전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여 발생하고 있음.

- *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2020회계연도 이전 0.015%, 2021년 0.013%, 2022년부터 0.01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9.8. 일부개정, 2021.1.1. 시행)

〈 최근 5년간 지방세 세입(보통세) 대비 출연금 산출 현황 〉 (단위: 백만원, %)

출연연도	세입결산	보통세 세입결산액			출연율	산출 출연금		
		결산액	증가액	증가율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2024	2022회계	22,116,405	87,756	0.4	0.012	2,654	11	0.4
2023	2021회계	22,028,649	2,289,383	11.6	0.012	2,643	275	11.6
2022	2020회계	19,739,266	2,527,101	14.7	상동	2,369	131	5.9
2021	2019회계	17,212,165	1,083,172	6.7	0.013	2,238	-182	-7.5
2020	2018회계	16,128,993	1,148,131	7.7	0.015	2,419	172	7.7

※ 출처 : 연도별 출연동의안 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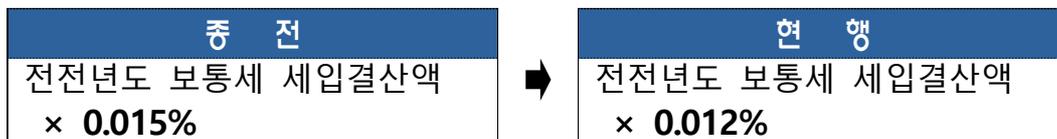
- 이는 출연금 규모를 종전(2020회계연도 출연)의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출연율을 하향 조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1.1.1. 시행) 취지에도 반할 뿐 아니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출연률 하향 조정 취지 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994호, 2020.9.8. 일부개정, 2021.1.1. 시행)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액이 부가가치세의 21퍼센트로 인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보통세 세입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종전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비율을 연차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 내용 :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비율(출연률)을 현행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서 1만분의 1.2로 조정하되, 2021년에는 1만분의 1.3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주성 제고를 추구하는 지방세연구원 정관(제2조) 목적 조항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임.

* 「한국지방세연구원 정관」 제2조(목적) 연구원은 지방세·재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재정자주성 제고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또한, 세입 규모에 연동하여 출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합리적 이유나 명분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바, 일반적인 출연금 산정 방식인 출연자의 심사를 통하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산정해야 할 것임.

○ 한편,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는 출연금을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같은 법 시행령(제94조)에서는 출연금을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우선 사용하도록 사용범위를 한정하여 강행 규정하고 있는바,

- 이는 「지방세기본법」 위임의 한계를 넘어선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행정 입법 형태으로써, 출연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불합리한 출연 방식의 개선을 위하여, 재무국에서는 단순히 정부에 건의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권위 있는 기관을 통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보다 실천력 있는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지방세발전기금(출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세기본법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동)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동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동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생략)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이하 생략)

다. 과다한 출연에 따른 과다한 잉여·적립금 발생

○ 지방세연구원 결산서를 보면, 최근 5년 평균(2018~2022 회계연도) 6억 5천 9백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매년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 한국지방세연구원 잉여금 발생 현황 > (단위: 천원, %)

회계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잉여금	877,283	761,768	645,269	774,535	236,290	-
잉여금 처리	이월	이월	이월	기금 적립	기금 적립	-
기금 적립				1,220,000 (잉여금포함)		

※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도별 결산서

지방세연구원 정관 제31조

제31조(잉여금의 처리) 매 사업3연도의 잉여금이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며 기금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15.>

- 조성된 기금(79억 2천만원) 등을 사용하여 2017년 7월에는 청사를 매입(176억 7백만원)한 데 이어,

<청사 매입 개요>

◇ 대상물건 : 서초구 양재동 352-5(한국승강기안전공단)

- 면적: 토지 762.2㎡, 건물 4,118.03㎡(지하3층~지상5층)

◇ 청사 이전비 총액 : 17,607백만원

◇ 기금 적립 : 총 79억 2천만원(적립원금:76.4억원, 이자총액:2.8억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적립 원금	1,094.8	768.2	2,904.6	1,506.4	1,367.8	0
발생 이자	-	26.4	41.6	14.3	87.0	109.0

※ 부족분 용자

◇ 기금 사용 : 전액 청사매입(2017.7.)에 사용

※ 기금사용안 이사회 의결 : 2017년 제1차 이사회(2.27) 및 제2차 이사회(7.4)

- 2021년부터 지방세교육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50억원 적립을 목표로 “연구원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있음.

* 기금적립 용도 : 지방세교육 기반시설 확보 (21.10.21. 2021년 제3차 이사회 의결)

- 다만, 적립 목표 기간(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의 절반이 경과한 2023년 8월 현재, 목표 대비 1.5배(148.8%, 24억 4천 1백만원) 수준의 기금이 적립되었는바, 이는 과도한 출연으로 인한 과도한 잉여금 발생에 원인이 있는 것임.

<지방세연구원 개원 후 기금 적립 및 사용내역>

□ 기금 적립내역 요약

○ 2013년~2018년 : 7,920백만원

(적립금 7,642백만원+이자 278백만원)

○ 2019년~2020년 : 적립 없음

○ 2021년~2023년 : 7,441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8월 현재
적립 납입액	1,220	5,889	332

□ 기금 집행내역

- 2018년 이전 적립 기금(7,920백만원) : 적립액 전액 청사매입(2017.7.) 및 대출 상환에 사용

- 2021년 이후 적립 기금(7,441백만원) : 목표(50억원), 정기예금 적립 중

※ 기금적립용도 : 지방세교육 기반시설 확보 ('21.10.21. 2021년 제3차 이사회 의결)

※ 출처 : 출연동의안 관련 의원요구자료 6번

- 한편,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사용 용도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지방세발전기금(출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지방세기본법 >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생략)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3. 지방세의 연구·홍보
 -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이하 생략)

- 그러나, 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개원 후 두 차례에 걸쳐 기금을 적립하여, 청사 매입과, 교육시설 조성(예정) 등 고정자산 확충에 사용하고 있고,
- 이는 출연 취지와 사용 용도와는 다르게 출연금으로 연구원 자립 기반 마련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출연제도 취지에 반하는 예산 운영 행태라고 할 것임.

라. 출연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 권한 배제

- 이러한 지방세연구원의 방만한 출연금 사용은 결국 과도한 출연금 징수로 가능하게 된 것임에도,
 -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에 대한 적정 출연규모나 지도·감독 등 통제 수단을 갖지 못하고, 출연금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 지방세연구원 기금관리위원회 구성(정관 제7조)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은 민간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외부위원과 관리직 또는 연구직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이는 지방세연구원이 출연자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편제*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출연자와 지도·감독 기관이 서로 다른 데에 원인이 있는 것임.
 - 따라서, 출연자가 출연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상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 기관을 지정하여 지방세연구원을 출연 주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재무국)의 주도적 대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 한국지방세연구원 직제 관련 규정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지방재정경제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7. (생략)

58.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운영 지원 (이하 생략)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⑨ 지방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8. 지방세연구원 및 지방세협회의 운영지도 및 지원
9. (이하 생략)

(참고)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체성

-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자와 지도·감독 기관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 지방세연구원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登記규칙」의 특수법인 중에서도 기타 분류할 수 없는 법인에 부여되는 “기타법인”으로 설립되어,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이 제외된 데에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는 극히 이례적으로 출연기관 운영 형태라고 할 것임.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인등기 형태〉

관할등기소	법인가분	본/지점	등기번호	상호	주말여부	폐쇄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기타법인	본점	009021	한국지방세연구원	N	살아있는 등기

※ 출처: 행정정보공동이용 센터(법인 등기사항 증명)

※ 재무국에서는 특별법(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으로서 헌법이나 상위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설립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해 대하여 의회에서는, 지방세연구원의 기타법인 등기 형태를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같이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 후속 필요 절차 이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운영할 수 있게 개선하라고 매년 지적해오고 있음에도,

* 이후 순차적으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방세연구원을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대상이 되게 하여, 출연기관 고시 및 출연자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

- 재무국은 줄곧 연구원이 특별법인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기타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속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재단법인’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동문서답’만 이어오고 있을 뿐,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한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의 설립 형태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부출연기관법」¹⁾ 및 「과기출연기관법」²⁾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연구원에 대한 근거 규정인 「지방연구원법」³⁾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의 일반법인 「지방출자출연법」⁴⁾에서는 모두 출연 연구기관의 법인 설립 형태를 일관되게 「민법」 중 재단법인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민법법인’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이를 고시(붙임 참조)하고 있으며, 당연히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도·감독하고 있음.
- 반면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임에도 기타법인으로 설립된 이유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출연자도 아닌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지방재정경제실)으로 편제⁵⁾되어, 행정안전부가 주무관청이 되어 지방세연구원 운영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5)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행정안전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지방재정경제실) 제12조제구항제8호).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설립·등기 관련 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특수법인 중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별표3에 열거되지 않은 법인은 기타법인으로 등기

- 이에 따른 결과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도한 출연금을 강제징수 할 수 있게 되었고,
- 잉여금의 발생에 따른 기금적립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등 방만한 재정 운영 형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 규모나 기금 적립 등 의사결정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반면, 지방세연구원의 주무관청인 행정안전부는 위탁 사업 대가의 경비 외의 순수 출연금은 부담하지 않고 있고, 연구원 원장 등 간부급 임원이 행정안전부 고위 관료 출신 위주로 임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이례적 운영 형태에 대하여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역대 원장 주요 경력〉

구분	성명	주요경력
1대	강○○ (2011. 2. ~ 2014. 2.)	- <u>안전행정부</u> 장관 (2014) - <u>행정안전부</u> 제2차관 (2009)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2008) -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2005)
2대	허○○ (2014. 4. ~ 2017. 4.)	-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위원 (2014) - <u>대통령 직속</u>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2013) -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 위원 (2013)
3대	정○○ (2018. 1. ~ 2019. 4.)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2019) - <u>국무총리소속</u>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2017)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2011)
4대	배○○ (2019.11 ~ 2022. 11.)	- <u>행정안전부</u> 재난협력실장 (2018)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2017) - 강원도 행정부지사 (2015)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2013)
5대	강○○ (현재)	- <u>행정자치부</u>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관 - <u>행정안전부</u> 지방세정책관 (2018) -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2020)

〈역대 부원장 주요 경력〉

구분	성명 (임용일)	인적사항
1	유○○ (2023.03.08.)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역대 경영기획실장 주요 경력〉

- 경영지원본부장, 경영기획실장, 경영지원실장 -

구분	성명 (임용일)	인적사항
1	심○○ (2015.02.02.)	- 강원대 행정학 석사 - 행자부 세제과 팀장, 지방분권지원단 과장, 행자부 지방세운영과장
2	조○○ (2018.04.02.)	- 중국인민대 행정학 석사 - 경기도 팀장, 행안부 공기업과 서기관, 이북5도 평안남도 사무국장
3	서○○ (2020.06.22.)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석사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자산관리과장·세무과장
4	박○○ (2023.~)	- 행안부 , 지방자치발전포럼 재정제세문과 위원 - 행안부 , 지방소득소비세 확대개편 TF 위원 - 경상남도, 재정정책자문위원

〈역대 지방세과표사업단장 주요 경력〉

구분	성명 (임용일)	인적사항
1	최○○ (2023.01.01.)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세무과장 등

〈역대 자치협력실장 주요 경력〉

- 교육본부장, 자치협력실장 -

구분	성명 (임용일)	인적사항
1	노○○ (2018.05.09.)	- 대법원 파견(지방세쟁송사건 자문) - 경기도 세정과 팀장, 세원관리과장, 세정과장
2	구○○ (2020.06.22.)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석사 및 한남대학교 경제학 박사 - 서산시 부시장, 충청남도 미래산업국장, 행안부 민간협력과장
3	김○○ (2022.12.19.)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 - 경기도 조세정의과장, 자산관리과장,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등

※ 정관에서는 원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협의 추천자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고, 5개 실장 중 경영지원실장과 자치협력실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용하며, 나머지 연구기획실장, 지방세연구실장,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연구직 연구위원 중에서 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도·감독 방안

- 본 출연동의안 관련 의원요구자료를 통한,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도·감독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제출 내용을 보면,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이행해야할 사항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을 받지 않는 출연기관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지도·감독 이행 내역, 경영실적 평가 여부 등에 대해서도 모두 “해당없음”으로 회신하는 등,

〈 동의안 관련 재무국 제출 자료 〉

- | |
|---|
| 25. 최근 10년간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 지방출자출연법(6조)에 따른 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 〈 해당사항 없음 〉 |
| 26. 연구원에 대한 지방출자출연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결과
: 〈 해당사항 없음 〉 |
| 27.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지방출자출연법 적용(경영실적 평가 등)을 받지 않는 기관 현황 (내역, 근거 규정 포함)
: 〈 해당사항 없음 〉 |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대한 일반법인 「지방출자출연법」에서 규정한 지도·감독 등 제도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대한 합리적 운영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음.
- 출연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 방안으로는 앞서 보았듯이 지방세연구원의 법인 형태를 재단법인으로 변경하여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요건을 갖추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 이후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제18조, 지도·감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의 지도·감독 >

<p>「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8조(지도·감독 등) 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p>
--

< 출연기관 기타 지도·감독 등 관련 규정 >

<p>「지방출자출연법」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p>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 다만, 지난 수년간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재무국은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통해 「지방출자출연법」에 근거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재무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운영 근거 비교 >

구분	출연기관 설립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등
설립 근거	<p>「지방출자출연법」</p> <p>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p>	<p>「지방세기본법」</p> <p>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p> <p>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p>
운영 사항	<p>제4조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p> <p>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p> <p>「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p> <p>제18조(지도·감독 등)</p> <p>③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p>	<p>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p> <p>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p> <hr/> <p>「공익법인법」</p> <p>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14조(감독) ①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p>
출연금 산정	<p>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p>	<p>「지방세기본법」</p> <p>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p>

구분	출연기관 설립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등
	<p>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p> <p>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 적립하여야 한다.</p> <p>「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p> <p>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p> <p>1. 1만분의 1.2</p> <p>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p> <p>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p> <p>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p>

※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근거 마련을 제안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175989, 2007.1.25., 심재덕 의원 외11인)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세의 수익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구기관의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용 부담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할 우려가 있다고 검토하고 있음.

- 한편, 지방세연구원 운영의 개선 방안으로, 그동안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에 미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와의 건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 본 사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행정안전부)의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같은 법 제187조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도 유사한 기능을 두고 있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협의 제도 〉

지방자치법(현행)

제186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요 〉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8297호, **2021.7.13. 제정**, 2022.1.13. 시행 -

◇ 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사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사무·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제2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86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사무 및 재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세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사항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203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나.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출연금액: 2,653,969천원
 - 산출내역 : 전전년도('22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22,116,404,703천원)×0.012%
- ※ 산출 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

- 지방세정책 수단의 개발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에 관한 연구

다. 출연의 필요성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법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출연은 법적사항으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수행 관련 소요비용에 사용되는 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방안과 세제개선 과제들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방세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등 역할 수행에 필요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세제과 세제정책팀 김종승 (☎ 2133-3353)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 1. 1만분의 1.2
 - ※ 비율변경(2020년 이전 1만분의 1.5, 2021년 1만분의1.3, 2020년 1만분의 1.2)
 -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 3. 지방세의 연구·홍보
 -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